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11)

직원이 무료로 해준 간단한 진료는 문제가 없을까?

한 두 환

법무법인 세동
변호사

today-we@hanmail.net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물병원에 평소 주요 고객인 나주인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나주인씨의 젓소들의 발굽삭제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김명의 수의사는 발굽삭제를 직접 하지 않고 명의동물병원의 직원인 이성실씨를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이성실씨는 나주인씨의 젓소들의 발굽삭제를 해주었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성실씨는 실수로 발굽을 과삭제하였고, 그 결과 젓소들에게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착유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주인씨는 김명의 수의사 때문에 손해를 보았으며, 김명의 수의사가 1천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명의동물병원의 경쟁병원인 실력동물병원의 박실력 수의사는 이성실씨가 발굽삭제를 한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명의 수의사는 손해배상과 수의사법 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까?

발굽삭제와 같은 간단한 진료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배운 직원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고객 관리로서 무료로 해주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무료로 발굽삭제를 해주다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준다는 것은 어찌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작 발굽삭제를 한 사람은 김명의 수의사 자신이 아니라 이성실씨이므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자신이 아닌 이성실씨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명의 수의사는 발굽삭제 같은 간단한 업무는 동물병원의 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신이 감독을 하는 상태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인식했을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의 이런 생각은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일까? 우선 수의사법부터 살펴보자.

1.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은 예외로 하고 있다.

발굽삭제는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자신이 직접 발굽삭제를 하였어야 한다. 김명의 수의사가 발굽삭제를 하라고 이성실씨를 보낸 것은 이성실씨로 하여금 수의사법을 위반하도록 지시한 것이 된다. 이를 형법상 ‘교사범’이라 하는데, 실제 위반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실씨뿐만 아니라 김명의 수의사도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김명의 수의사가 옆에서 감독·지도를 하면서 이성실씨가 발굽삭제를 하는 것은 괜찮을까? 수의사법의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감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김명의 수의사가 이성실씨 옆에서 발굽삭제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하더라도 수의사법 위반은 인정된다.

그리고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는 수의사법 제39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김명의 수의사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나주인씨는 김명의 수의사에게 발굽삭제를 요청하였으므로 김명의 수의사가 직접 발굽삭제를 하였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명의 수의사가 이성실씨를 보낸 것은 수의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나주

인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호의관계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다. 호의로 무료로 해준 진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법률적인 계약이 아니라 호의로 해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경감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가가 없다고 무책임한 진료를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되는 정도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해 정하게 된다.(편의상 경감비율을 20%로 인정한다면, 나주인씨의 전체 손해 1천만원에서 손해배상 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다. 과실상계

나주인씨는 김명의 수의사가 아닌 이성실씨가 발굽삭제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였다. 즉, 나주인씨의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주인씨도 과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인씨의 과실 비율만큼 과실상계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된다.(편의상 나주인씨의 과실을 40% 인정한다면, 손해배상 금액은 480만원이 된다.)

라. 이성실씨에 대한 구상권

나주인씨의 손해는 김명의 수의사와 이성실씨가 공동으로 유발한 것이다. 이성실씨는 직접 발굽삭제를 하였고, 김명의 수의사는 이성실씨가 발굽삭제를 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주인씨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김명의 수의사와 이성실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여기서 이성실씨의 책임 비율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하게 된다.(편의

상 이성실씨의 책임 비율을 50% 인정한다면, 김명의 수의사의 손해배상 금액은 240만원이 된다.)

그런데 나주인씨는 이성실씨가 아니라 김명의 수의사에게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책임을 지는 경우, 김명의 수의사는 일단은 나주인씨에게 이성실씨의 책임 비율도 포함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480만원). 그리고 차후 이성실씨에게 이성실씨의 책임 비율만큼을 청구할 수 있다(240만원). 여기서 김명의 수의사가 이성실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한다.

3. 이성실씨의 책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성실씨는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성실씨도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문제는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긴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성실씨가 간단한 진료를 대신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별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김명의 수의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칼럼에 실을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를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자의 이메일로 상담글을 보내주세요. 상담글에 답변도 드리고, 익명의 칼럼 사례로서 신고자 합니다. 어떠한 주제라도 괜찮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